

제 1 장 목적 및 일반정의

제 1.1 조 목적

1.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품, 서비스,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.

2.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가.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이하 “1994년도 GATT”라 한다)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

나.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이하 “GATS”라 한다)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

다. 당사자의 경제에서 경쟁, 특히 양 당사자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

라.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

마.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

바.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

사.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,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, 그리고

아.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,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

제 1.2 조 일반정의

이 협정 전반에 걸쳐,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.

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, 다른 한편으로는 *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*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(이하 “유럽연합 당사자”라 한다)을 말한다.

기본협정이란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*대한민국과 구주 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* 또는 이를 갱신, 개정 또는 대체하는 협정을 말한다. 그리고,

세관협정이란 1997년 4월 1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*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*을 말한다.